



대구광역시장선거관리위원회

2026. 3. 19.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에 따른

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직기한 안내

꼭
확인하세요!





광역의원(지역구·비례) 및 광역자치단체장

1)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

- ▶ 해당 시·도의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, 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<예시>

대상	직 유지 가능 선거
대구시의원, 대구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대구시의원, 대구시장 ◆대구시 내의 모든 구·군의 의원 및 단체장 (달서구의원, 달서구청장 등)



2) 선거일전 30일(2026. 5. 4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
- ▶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(‘4페이지의 4’)는 제외
- ▶ 광역의원이 다른 시·도의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,
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<예시>

대상	30일 사직 선거
대구시의원	◆대구시 외의 모든 시·도, 구·시·군의 의원 및 그 단체장 (경상북도의원, 경상북도지사, 구미시의원, 구미시장 등)



3) 선거일전 90일(2026. 3. 5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
- ▶ 광역단체장이 다른 시·도의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, 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4) 선거일전 120일(2026. 2. 3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
- ▶ 광역단체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※ 상기 3), 4)의 경우 해당일이 기경과하였으므로
현재 광역단체장으로 재임중인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음.



기초의원(지역구·비례) 및 기초자치단체장

1)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

- ▶ 해당 시·도의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,
당해 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<예시>

대상	직 유지 가능 선거
달서구의원, 달서구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대구시의원, 대구시장 ◆달서구의원, 달서구청장



2) 선거일전 30일(2026. 5. 4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
- ▶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(‘7페이지 4’)는 제외)
- ▶ 기초의원이 다른 시·도의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,
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 및 해당 시·도의 다른
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<예시>

대상	30일 사직 선거
달서구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대구시 외의 모든 시·도의 의원 및 그 단체장 (경상북도의원, 경상북도지사 등) ◆달서구 외의 모든 구·시·군의 의원 및 그 단체장 (수성구의원, 수성구청장, 구미시의원, 구미시장 등)



3) 선거일전 90일(2026. 3. 5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
- ▶ 기초단체장이 다른 시·도의 광역의원, 광역단체장, 기초의원, 기초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4) 선거일전 120일(2026. 2. 3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
- ▶ 기초단체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·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※ 상기 3), 4)의 경우 해당일이 기경과하였으므로
현재 기초단체장으로 재임중인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음.

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
2026. 6. 3.(수)

그 외 자세한 사항은
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

‘정보공간 > 선거법규 > 공직선거법’ 을
확인하세요

선거법질의·신고제보 : 국번 없이 1390(유료)